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9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 박수영·박성민·송언석

이종욱 • 이인선 • 곽규택

이헌승 · 서천호 · 김석기

박성훈 • 박수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금리·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 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%p 상향하여 80%로 하고,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%p 상향하여 20%로 함(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"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"로,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80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20"으로 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) 2023 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[별표]

<u>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</u>(제126조의2제2항제 6호 관련)

1.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.

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	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			
최저사용금액 간 조건	차감하는 금액			
최저사용금액 < 제2호가목의 금액	최저사용금액 × 100분의 15			
제2호가목의 금액 < 최저사용금 액 ≤ (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 액의 합계액)	제2호가목의 금액 × 100분의 15 + (최저사용금액 - 제2호가목 의 금액) × 100분의 30			
(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) < 최저사용금액 ≤ (제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)	제2호가목의 금액 × 100분의 15 + 제2호나목의 금액 × 100분의 30 + (최저사용금액 - 제2호가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) × 100분의 40			
(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 액의 합계액) < 최저사용금액	제2호가목의 금액 × 100분의 15 + 제2호나목의 금액 × 100분의 30 + 제2호다목의 금액 × 100 분의 40 + (최저사용금액 - 제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			

- 2.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
 - 가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
 - 나.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)의 금액은 제외한다)
 - 1)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사용분
 - 2)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 용분
 - 다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
 - 라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 사용분
- 비고: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 과 같음) 략)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 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 서 "전통시장사용분"이라 한 다) × 100분의 4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 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

- 2. ~ 5. (생략)
- 6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7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
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
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
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

<u>2024년 1월</u>
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
<u>100분의 80</u> -
2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2024년 1월 1일부</u>
터 2024년 12월 31일
·.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7

31일까지의	신용	카드등	사용	-금
액 연간합기	계액의	100분	-의]	105
상당액을	차감한	금이	범(0보	.다
작은 경우	에는	없는	것으	로
본다) × <u>10</u>)()분의	10		
③ ~ ⑩ (성	랭 략)			

100분의 20
③ ~ ⑩ (현행과 같음)